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제출년월일 : 1997년 3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장애인, 재래시장 재개발 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축소하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조항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 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1.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등록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함 (안 제3조의2)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안 17조의2)

2.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관련규정 신설

-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함 (안 제26조의2)

3. 점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감면을 축소 조정

- 부동산 등기신청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점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20%를 경감하던 것을 10%로 축소 (안 제20조 제1항, 제2항)

4. 불합리한 조문 보완

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임대사업자등이 미분양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임대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안 제14조 제2항)

나. 농외소득원 개발 감면 규정 보완

○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제276조)과 중복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감면조례의 해당 규정 삭제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취득하는 모든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과세대상은 물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형평이 맞지 않는등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내」로 감면범위를 제한하고, 감면업종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제조업)으로 구체화 하며, 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 부동산을 명확히 함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 보완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감면하여 주던 것을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함
(안 제6조의2)

라. 취득세·등록세 추징규정 보완

- 현행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던 것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함 (안 제5조, 제6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 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단서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 단서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 단서중 “아니하는” 을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 를 “사용승인일까지” 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부터” 를 “사용승인일부터” 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을 “아니하는” 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 하는” 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 등기를” 을 “사용승인일 또는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5조 제2항 본문중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18조 제1항 제1호중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를 “받은 자” 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를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위하는” 을 “영위하고자 하는”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20을” 을 각각 “100분의 10을” 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점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 시행당시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